

한국수출입은행

# 조사 및 입찰지원제도 안내



# CONTENTS

1



대상사업 선정

2



용역비용의 지급

3



용역보고서  
제출 및 평가

4



평가의견 조사



## 대상사업 선정

### 1. 대상사업

수출입은행 중소, 중견 고객기업이 추진하는 해외사업

고객기업이란?

신청일 현재 여신승인액 및 여신잔액 보유 국내기업

- ✓ 수출형 혁신성장사업은 비고객기업도 신청 가능

수출형  
혁신성장사업

혁신성장정책금융센터의 「2023년 혁신성장 공동기준」 등에 따라  
수출입은행이 선정한 수출형 혁신성장산업의 대상 품목에 관한 사업으로,  
서비스산업(보건의료·제약 등), 에너지산업(신재생에너지 등),  
ICT 융합산업(로봇, 스마트기기 등) 등 284개 품목으로 구성



## 대상사업 선정

### 2. 지원항목 해당 사업의 조사 및 입찰과 관련한 외부용역비용

#### 용역계약체결



신청기업이  
용역기관과 직접체결

#### 지원금액

건별한도 3억원 범위내

중소기업

중견기업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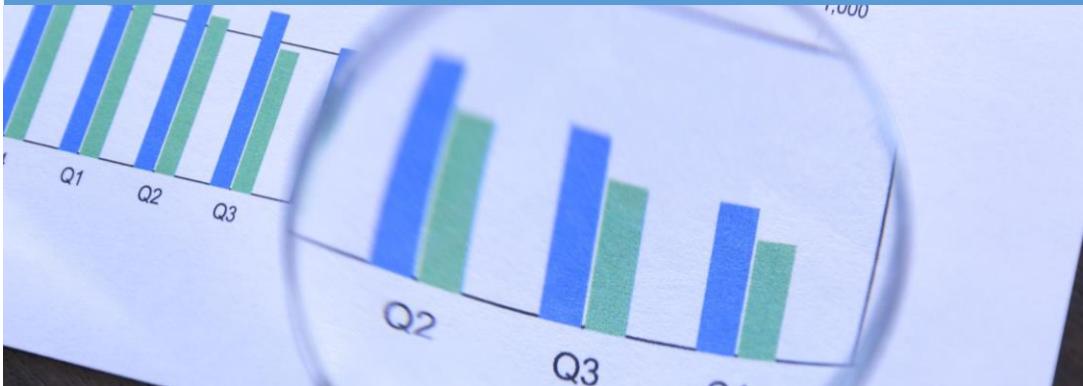
용역금액의  
70%까지 지원

용역금액의  
50%까지 지원



## 대상사업 선정

### 조사지원



신규 수출거래 발굴, 해외투자,  
해외사업 수주 등 해외시장 개척을 위해  
필요한 조사 및 분석에 소요되는  
용역비용의 일부 지원

### 입찰지원



국제 경쟁입찰(제한경쟁 입찰 포함)  
참여를 위한 시장조사, 입찰 타당성 검토  
등의 사전 조사 활동에 소요되는  
용역비용의 일부 지원



## 대상사업 선정

### 3. 신청서류 접수

#### 공모주기 및 방법

수시접수, 정기평가, 홈페이지공고 ([www.koreaexim.go.kr](http://www.koreaexim.go.kr))

#### 신청서류

이메일로 접수, 서류접수시 신청기업앞 접수번호 발급

용역계약을 체결한 경우

용역계약관련증빙서류제출

용역수행사선정 예정인 경우

2개 이상전문기관의 견적서제출

#### 컨소시엄

대표사가 신청서를 작성하며, 컨소시엄 개요 및 소개자료 등 제출



## 대상사업 선정

### 4. 서류 사전검토

#### 심사부적격 판단 시 평가 대상사업에서 제외

심사부적격  
사유

심사를 위한 **서류가 불충분**한 경우

신청기업이 수출입은행 **여신규정상 여신부적격자(연체 등)** 및  
**여신억제기업**에 해당하는 경우

**중복수혜** 받은 사실이 확인된 경우

- ① 수출입은행 수출촉진자금대출 중 해외시장 개척자금대출과 중복수혜 여부 확인
- ② 해외건설협회 등 다른 기관으로부터 동일 과업에 대한 중복수혜 여부 확인



## 대상사업 선정

### 5. 선정방법

공모방식, 사업선정위원회에서 평가하여 선정

#### 사업선정위원회 구성

내·외부 전문가 (외부전문가는 Pool 구성)

사업별평가시간 30분 (발표 15분, 질의응답 15분)

#### 평가기준

평가배점표 활용

### 6. 공모결과공지

수출입은행홈페이지에공지



## 용역비용의 지급

### 1. 지급방법



#### 수출입은행이 용역수행사 앞 직접지급

※ 단, 신청기업이 사업선정이전에 용역수행사와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액의 상당부분을 지급한 경우에는 신청기업에게 지급할 수 있음

### 2. 제출서류



용역비용지급 신청서,  
용역수행사 청구내역서 등



## 용역보고서 제출 및 평가

### 1. 용역보고서 제출

용역수행완료후, 해당결과보고서(용역보고서)를 수출입은행에 제출

### 2. 용역보고서 평가

- ✓ 용역보고서는 평가기준표에 따라 평가위원회에서 평가 (목적부합성, 내용의 적정성)
- ✓ 필요시, 신청기업 앞 용역보고서에 대한 **보완요청 가능**
- ✓ **평가결과** (신청기업 및 용역수행사 정보 포함) 및 **평가이력은 향후 수출입은행의 여신심사 및 사업선정시 참고자료로 활용 예정**



## 평가의견 조사

### 평가의견 조사

신청기업 및 용역수행사를 대상으로  
지원 결과 등에 대한  
평가의견 및 건의사항 등 조사

지원 완료 후

향후  
제도개선에  
활용